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6.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5. 16. 이인순 의원 외 7인 (의안번호 482호)
- 나. 회부일자: 2025. 5. 2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6. 9.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7조(사용료 등) 제2항에 따른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제5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 (감면율 100분의 100)을 추가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20. ~ 2025. 5.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에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을 추가하여 피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2024. 8.31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8,522건(전국)이고, 아동학대 판단은 53%인 2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를 차지하여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신고 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¹⁾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아동학대 판단 건수 ²⁾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 1)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 아동학대 신고 건 중 동일 건 신고 등으로 바로 종결 처리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건수

2) 아동학대 판단 건수 :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

나. 주요내용

○ 안 제27조(사용료 등) [별표3] , 감면대상(감면율 100분에 100) 추가

[별표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에 감면대상 제5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통보 아동”을 감면율 100분의 100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1)에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2)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점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감면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별표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5.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		추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5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100분의 30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다. 종합의견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등의 통보)제3항4)에서는 구청장은 학대 피해 의심 통보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성북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에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통보아동을 추가하는 것은 대상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취지나 내용이 적절하고 특별한 위배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4)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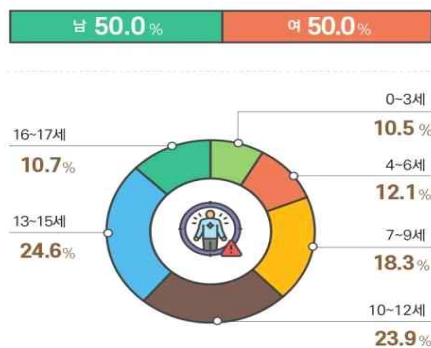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2023 아동학대 통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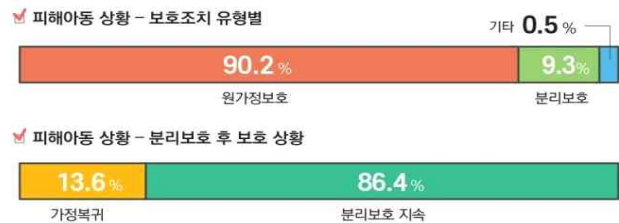
01 | 신고접수·판단 및 아동학대 유형



02 | 피해아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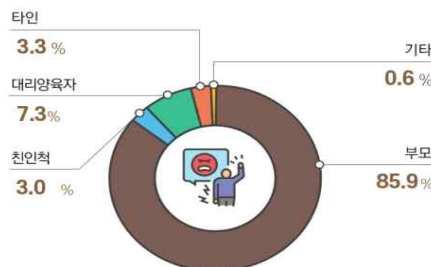
03 | 피해아동 상황



05 | 학대행위자 상황



04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06 | 서비스 제공 현황



07 | 아동학대 사망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제27조(사용료 등) 제2항에 따른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제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수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나. 수정 내용

현 행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50
수 정 안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100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82
----------	--------

제안연월일: 2025년 6월 9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27조(사용료 등) 제2항에 따른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제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수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현 행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50
수 정 안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100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5.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50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100분의 30

※ 단, 중복할인은 불가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2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16일

발의자 : 강수진,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정병기

1. 제안이유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7조(사용료 등) 제2항에 따른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제5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감면율 100분의 100)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5.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50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100분의 30

※ 단, 중복할인은 불가함.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6.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5. 20.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76호)

나. 회부일자: 2025. 5.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6. 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2025.12.31)에 따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 고(前 위탁현황)
		대지	건물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삼양로2길 55 (길음제2동)	1,101	2,625 (지하2/지상5)	1992.4.1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위탁기간 2021.1.1~2025.12.31)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 위탁사무의 범위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위탁 대상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이 2025.12.31자로 만료되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5조5)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수	위탁법인	'25년 사업비 (천원)
		대지	건물		위탁기간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삼양로2길 55 (길음제2동)	1,101	2,625 (지하2/지상5)	22명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21.1.1.~'25.12.31.	1,328,441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7) 및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5년간 위탁할 수 있음.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은 적정해 보임.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7.(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를 재 위탁하기 위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76
----------	-----

제출년월 : 2025. 06.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필요성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2025.12.31.)에 따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위탁(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고(前 위탁현황)
		대지	건물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삼양로2길 55 (길음제2동)	1,101	2,625 (지하2/지상5)	1992.4.1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위탁기간 2021.1.1~2025.12.31)

나.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다. 위탁사무의 범위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다수 신청 시 심의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 제외한 후 점수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 선정
- 심사내용 : 법인 자격기준, 재정현황 및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법인 및 시설의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마.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 원칙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사회복지관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사업의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준수

4. 향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공모접수 : 2025. 7. ~ 8.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5. 9. ~ 10.
- 위탁계약 체결 : 2025. 11. ~ 12.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추진 : 2026. 1. ~

5. 참고사항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 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6.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5. 20.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77호)

나. 회부일자: 2025. 5.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6. 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12.31.~2026. 2.28자로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재위탁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길음성가 (박설희)	길음로9길50 (길음제1동)	재단법인 성가소비녀회(나경숙)	76/60	2021.01.01. ~ 2025.12.31.
2	푸른성북 (김수정)	지봉로23길51 (보문동)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김영남)	42/25	
3	경동 (안미진)	고려대로14길42 (안암동)	대한감리회유지재단 경동교회(한병희)	27/14	2021.03.01. ~ 2026.02.28.
4	소리 (이혜경)	오패산로98-12 (월곡1동)	개 인 (이혜경)	99/90	
5	동심빼아재 (이복순)	송인로2길61 (길음2동)	개 인 (이복순)	20/14	
6	자연아이 (최유경)	돌곶이로40길46 (장위1동)	개 인 (최유경)	85/70	
7	키노 (최곤화)	정릉로26길8 (정릉2동)	개 인 (최곤화)	20/10	
8	해오름 (박정숙)	오패산로46 (월곡1동)	개 인 (박정숙)	20/17	

-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 수탁기관 선정 : 2025년 제2차,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위탁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19p

나. 주요내용

- 재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소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31~2026. 2. 28자로 만료되기에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⁸⁾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1항⁹⁾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8)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¹⁰⁾ 및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제1항¹¹⁾에서는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¹²⁾,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10)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77
----------	-----

제출년월 : 2025년 6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길음성가 (박설희)	길음로9길50 (길음제1동)	재단법인 성가소비녀회 (나경숙)	76/60	2021.01.01. ~ 2025.12.31.
2	푸른성북 (김수정)	지봉로23길51 (보문동)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김영남)	42/25	
3	경동 (안미진)	고려대로14길42 (안암동)	대한감리회유지재단 경동교회 (한병희)	27/14	2021.03.01. ~ 2026.02.28.
4	소리 (이혜경)	오패산로98-12 (월곡1동)	개 인 (이혜경)	99/90	
5	동심빼아제 (이복순)	승인로2길61 (길음2동)	개 인 (이복순)	20/14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6	자연아이 (최유경)	돌곶이로40길46 (장위1동)	개 인 (최유경)	85/70	
7	키노 (최곤화)	정릉로26길8 (정릉2동)	개 인 (최곤화)	20/10	
8	해오름 (박정숙)	오패산로46 (월곡1동)	개 인 (박정숙)	20/17	

1)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2) 수탁기관 선정 : 2025년 제2차,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나. 위탁 사업의 범위

-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